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업육성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전주시장

I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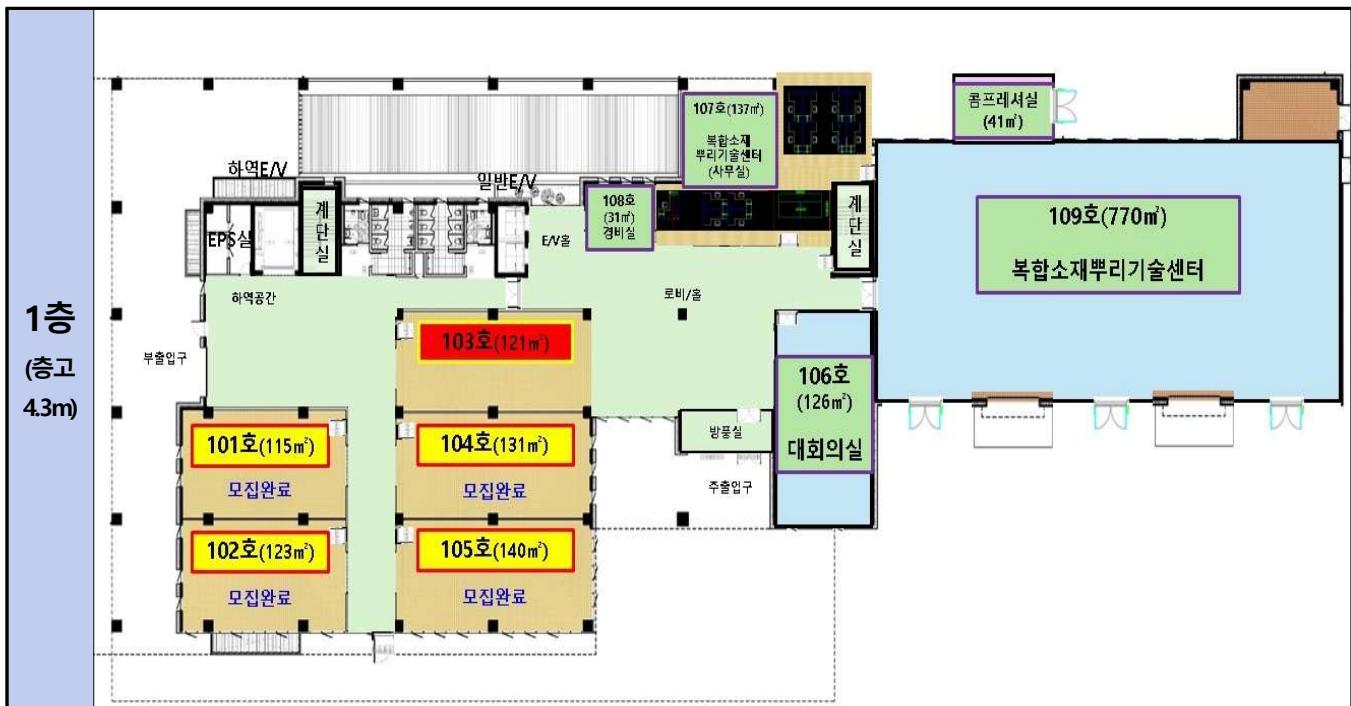
- 시설명 :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 설립·소유 : 전주시
- 관리·운영 : 전주시 ※추후 관리위탁 시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전주첨단벤처단지 내)
- 시설규모 : 연면적 9,999.59m², 부지면적 8,400m² ※ 지하 1층, 지상 4층
-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연구개발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 상대보호구역
- 주요시설 : 입주공간(35개실), 지원시설(회의실, 교육실 등), 지하주차장 등
- 주차대수 : 334대(장애인주차 11대 포함) ※지상 218대, 지하 116대(단지 전체 면적)
- 총별현황

구분	면적(m ²)	현황	
계	9,999.59	• 입주공간 총 35실(공장형 5, 사무형 30)	
지하1층	2,367.48	• 주차장	•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2,471.3	• 입주공간 5실(공장형 5)	• 경비실, 대회의실 • 복합소재뿌리기술센터
지상2층	2,054.15	• 입주공간 9실(사무형 9)	• 회의실, 교육실
지상3층	1,519.91	• 입주공간 10실(사무형 10)	• 회의실, 휴게데크
지상4층	1,586.75	• 입주공간 11실(사무형 11)	• 회의실

II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층별배치도 및 모집 대상 호실 (■ : 모집 호실)

○ 1층 (모집 호실 : 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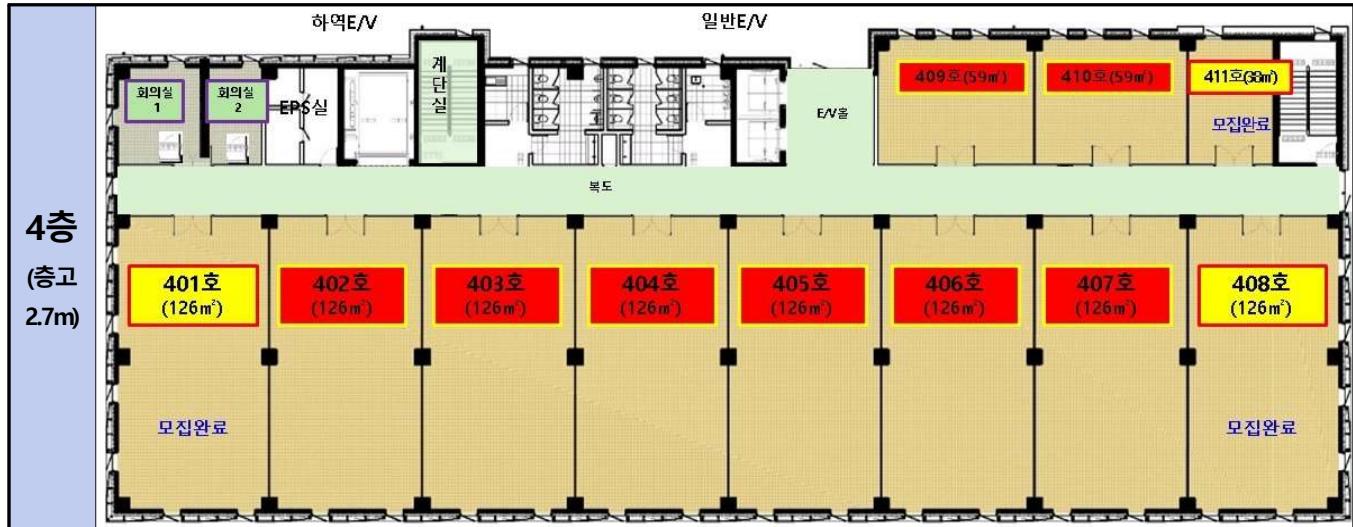
호 실		전용면적 (m ² , A)	공용면적 (m ² , B)	공급면적 (m ² , A+B)	공급면적 (평)	연사용료 (원, VAT 별도)	입주보증금 (원)	관리비보증금 (원)
1층	103호	121	83	204	62	4,492,400	2,246,200	2,595,060

○ 3층 (모집 호실 : 1실)



호 실		전용면적 (m ² , A)	공용면적 (m ² , B)	공급면적 (m ² , A+B)	공급면적 (평)	연사용료 (원, VAT 별도)	입주보증금 (원)	관리비보증금 (원)
3층	310호	34	23	57	17	1,116,800	558,400	810,420

○ 4층 (모집 호실 : 8실)



호 실	전용면적 (m ² , A)	공용면적 (m ² , B)	공급면적 (m ² , A+B)	공급면적 (평)	연사용료 (원, VAT 별도)	입주보증금 (원)	관리비보증금 (원)
4층	402호	126	86	212	64	4,063,800	2,031,900
	403호	126	86	212	64	4,063,800	2,031,900
	404호	126	86	212	64	4,063,800	2,031,900
	405호	126	86	212	64	4,063,800	2,031,900
	406호	126	86	212	64	4,063,800	2,031,900
	407호	126	86	212	64	4,063,800	2,031,900
	409호	59	40	99	30	1,896,400	948,200
	410호	59	40	99	30	1,896,400	948,200

○ 입주자격

-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입주대상 및 선정방법)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또는 벤처 관련 기업,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 기업, 기술 개발 관련 연구시설, 청년 창업기업 등

※ 입주허용 업종코드(붙임1 참조)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입주신청기업의 업종코드 판단 기준 : 입주신청기업은 입주신청서에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서의 주된 산업활동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함

○ 입주불허업종 ※붙임2 참고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 현황]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불허업종
- 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 ·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별표1. 불허용도
- 관련 법령 및 지침 내 불허업종

○ 우대사항

- 복합소재(탄소소재 포함) 및 메카트로닉스 기반 관련 기업
- 드론, PAV(개인형 자율항공기) 관련 기업
-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부터 이전(확장) 기업

※ 관련 지침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3조(센터의 입주기업 선정 및 관리)」

① 센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각 센터가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IV

사용 허가 조건

○ 입주기간

- 최초 사용 허가 기간 : 3년 이내

○ 사용허가 및 입주예정일

- 사용허가 신청 : 입주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사용허가 :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입주예정일 :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 장비 및 비품 하중 제한 등

- 1층 : 3,000kg/m², 2~4층 : 1,000kg/m²

※ 입주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주요 장비 및 비품의 하중을 명기해야 함

※ 고의로 하중기준 초과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 시는 해당장비 퇴출 조치

○ 소음, 진동 기준 등

- 소음, 진동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함.

※ 소음, 진동 관리법 위배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조치

○ 입주선정 및 사용허가 취소

- 입주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 미이행 시 입주선정 취소
- 입주예정일 내 미입주 및 입주부담금 미납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사용 허가 조건 등 미준수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 입주부담금(공급면적 기준)

- 사용료, 입주보증금, 관리비보증금을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함

구 분	세부항목	정 의	비 고	
사 용 료	사 용 료	연간 사용료(※ 층별배치도 및 모집대상호실 참고) ※ 일할 계산 청구	일시납	
입주보증금	입 주 보 증 금	최초 입주 시 연간사용료의 1/2	일시납	
관리비보증금	관 리 비 보 증 금	예상 월관리비의 6개월분 ※ 현금 납부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 제출	일시납	
관리비	기본관리비 (고정관리비)	청소비	업체별 공급면적 청소인력 인건비 등	월 납
		화재보험비	업체별 공급면적 건물 화재보험비	월 납
		일반관리비	벤처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월 납
변동관리비	전기요금	업체별 공급면적 전기사용요금	월 납	
	상하수도요금	업체별 공급면적 상하수도요금	월 납	
	가스요금	업체별 공급면적 도시가스요금	월 납	
	기타요금	제소전화해신청비용 등	사안발생시	

※ 사용료는 1년 단위 일괄 선납부 원칙이며,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가액 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본관리비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변동관리비란 사용량 등에 따라 매월 달리 부과되는 관리비를 의미함

※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무인경비요금 등은 입주기업별 사용여부에 따라 해당 기관(업)에서 별도 부과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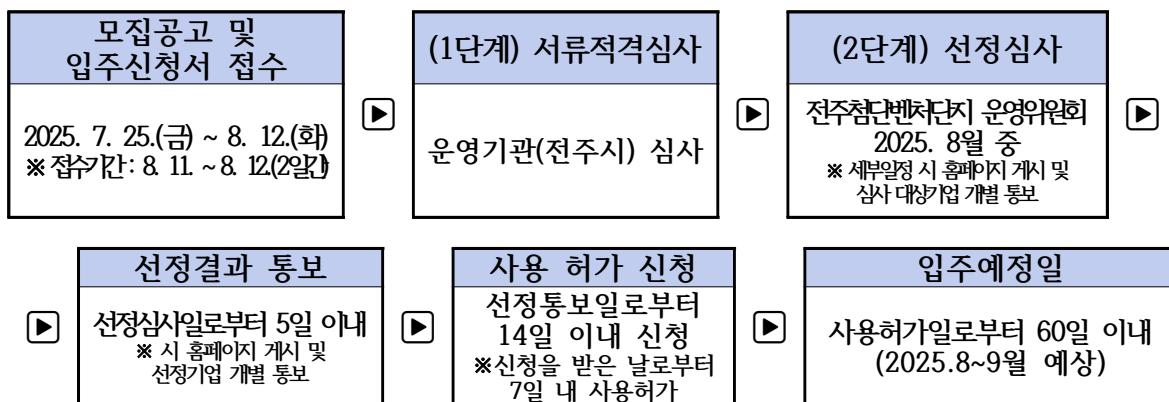
접수 및 심사방법 등

- 모집규모 : 일반기업실 10개실
 - ※ 모집규모는 신청 현황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호실 신청
 - 기업당 1개 호실 신청 원칙
 - 호실 동시 사용 시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 ※ 관리기관 및 운영위원회 심의로 조정될 수 있음
- 전주시 누리집(전주소식>공고>고시/공고) 모집 공고 등을 통한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25. 7. 25.(금) ~ 8. 12.(화) / 19일간
- 접수기간 : 2025. 8. 11.(월) ~ 8. 12.(화) 18:00까지 / 2일간
- 신청서 접수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 JAMSOO93@korea.kr
 - ※ 유선을 통한 접수확인 요망(미확인에 의한 접수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 8. 12.(화) 18시 00분 도착분까지 인정하며,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 우 편 : (우편번호) 54995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빌딩 5층 신성장산업과 산학협력팀 성장동 담당자 앞
 - ※ 8. 12.(화)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접수문의 : 전주시청 신성장산업과 산학협력팀(063-281-2491, 2548, 2257, 2877)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 목록	비고
공통 서류	입주신청서	1부 소정 양식(붙임4)
	사업계획서	1부 소정 양식(붙임4)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기간 내 발행분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22~24년)	1부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1부 대표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붙임4)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1부 사업계획서 상 기재한 각종 수상 및 인증 증빙서류 ※ 수출실적(최근3년)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제출

※ 입주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 및 방법은 내·외부적 사유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1단계) 서류심사 : 입주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운영기관(전주시)에서 적격심사
※ 서류심사 상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심사 제외
- (2단계) 선정심사 :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

- 선정심사는 발표·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발표자료(PPT, 10페이지 이내) 또는 제출된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로 평가
- 심사결과에 따라 입주 공간 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세부 심사결과는 미공개)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를 평균하여 심사 결과 평점이 높은 순부터 입주호실을 결정함
(동점 발생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 선정기업의 입주거부, 사용허가 신청 지연 등으로 인한 공실발생을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순위를 부여하여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음
- 평점 8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예비입주자 또한 선정 불가)

○ 입주기업 선정 심사표

심사 항목		세부 심사 내용						배 점													
정량 (20)	1.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내 자본총계/부채와 자본총계×100 <table border="1"> <tr> <td>자기자본비율</td><td>5%미만</td><td>5~29%</td><td>30~39%</td><td>40~49%</td><td>50%이상</td></tr> <tr> <td>점수</td><td>3.0</td><td>3.5</td><td>4.0</td><td>4.5</td><td>5.0</td></tr> </table> <p>※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계산 ※ 재무제표 미 보유 신생기업(창업 1년 이내)의 경우, 점수 3점 부여</p>	자기자본비율	5%미만	5~29%	30~39%	40~49%	50%이상	점수	3.0	3.5	4.0	4.5	5.0							5
자기자본비율	5%미만	5~29%	30~39%	40~49%	50%이상																
점수	3.0	3.5	4.0	4.5	5.0																
2. 매출액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22~24년 기준 <table border="1"> <tr> <td>증가율</td><td>0.5% 미만</td><td>0.5%~2% 미만</td><td>2%~3.5% 미만</td><td>3.5%~5% 미만</td><td>5% 이상</td></tr> <tr> <td>점수</td><td>3.0</td><td>3.5</td><td>4.0</td><td>4.5</td><td>5.0</td></tr> </table> <p>※ 2개년 매출액 증가율 합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예시 : [(22~23년 증가율) 0% + (23~24년 증가율) 0%] / 2 = 0%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계산 ※ 재무제표 미 보유 신생기업(창업 1년 이내)의 경우, 점수 3점 부여 ※ 매출액 증가율이マイ너스 값일 경우, 점수 3점 부여</p>	증가율	0.5% 미만	0.5%~2% 미만	2%~3.5% 미만	3.5%~5% 미만	5% 이상	점수	3.0	3.5	4.0	4.5	5.0							5	
증가율	0.5% 미만	0.5%~2% 미만	2%~3.5% 미만	3.5%~5% 미만	5% 이상																
점수	3.0	3.5	4.0	4.5	5.0																
3.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인증, KS표시허가, 생산성우수, Q마크 획득, 단체표준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IT, BT, NT, CT, ET, ST 및 EM마크 표시업체) 등 <p>※ 3건 이상(5점), 2건(3점), 1건(1점)</p>							5													
4. 고용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 <p>※ 3명 이하 3점, 추가 1명당 1점 부여</p>							5													
정성 (80)	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의 현실성 - 시장 분석, 수익 모델 등 전략의 적정성 							20												
	6. 대표자의 역량 및 경영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의 사업 운영 능력, 의지, 경력 - 경영 마인드 및 리더십 -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전 							20												
	7. 기술력 및 시장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기술의 독창성 및 경쟁력 - 기술혁신 가능성 - 제품 또는 기술의 시장성 							20												
	8. 지역 기여도 및 입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고용창출, 산업 파급력 - 첨단벤처단지 내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 입주 필요성 및 타당성 							20												
합 계		총 8개 심사항목						100													
가점 (10)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소재(탄소소재 포함) 및 메카트로닉스 기반 관련기업 - 드론, PAV(개인형 자율항공기) 관련 기업 -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 기업 <p>※ 중복 시 1개로 인정</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부터 이전(확장) 기업 							5												

○ 유의사항

- 입주기업은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지침」, 사용 허가 조건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입주신청(사업계획서 등) 시 제출한 서류, 기재 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선정기준 및 방법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53조(별칙)에 따라 처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해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에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 입주기업은 입주공간의 기본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함. 또한, 입주기업이 시설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기간만료 또는 입주기업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 건물 내·외벽에 입주기업(관)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설치 불가. 단,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곳이나 허가를 득할 경우 설치 가능.

○ 입주혜택 및 지원내용

-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각종 회의실, 교육실 등 이용 가능
- 카페, 식당, 휴게공간, 체력단련실 등 각종 편의시설 운영 ※붙임3 참고

붙임1

입주허용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5자리)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 여부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 물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2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5921	금속 열처리업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25931	날붙이 제조업	○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
		263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
		2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12	변압기 제조업	○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	○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
				28202	축전지 제조업	○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 기 제조업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29162	승강기 제조업	○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 장비 제조업	○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31114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	○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332	악기 제조업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 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
				33933	표구 처리업	○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33993	비 및 솔 제조업	○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
58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
60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612	전기 통신업	61210	유선 통신업	○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61291	통신 재판매업	○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4	금융업	642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71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
				71102	변리사업	○
				71103	법무사업	○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	공인회계사업	○
				71202	세무사업	○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715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71511	제조업 회사 본부	○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
				71531	경영 컨설팅업	○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
		716	기타 전문 서비스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
				73203	시각 디자인업	○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
				73303	사진 처리업	○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입주허용부 여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증개업	○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 술 서비스업	○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 업		75911	문서 작성업	○
				75912	복사업	○
				75919	기타 사무 지원 서비 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 외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 계·장비 임대업	○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85	교육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85110	유아 교육기관	○
		856	기타 교육기관	85650	직원 훈련기관	○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	85701	교육관련 자문 및 평 가업	○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 스업	○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0	산업 단체	○
				94120	전문가 단체	○

붙임2

입주불허 업종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 업종 현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물환경보존법)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공장(시설) 중 1종~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시설) 중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시설(물환경보전법)

[불허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0)식료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 중 세세분류(10211, 10213, 10219, 10220)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
(11)음료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업종 전체
(12)담배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업종 전체
(13)섬유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방전 및 가공사 제조업(131) 중 세세분류(13103, 13104)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132) 중 세세분류(13213)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39) 중 세세분류(13994)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피제품 제조업(142)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세세분류(15110)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제 및 목재 가공업(161) 중 세세분류(16102, 16103)나무제품 제조업(162) 중 세세분류(16211, 16212)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세세분류(17110, 17121, 17122, 17123, 17124, 1712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석유정제품 제조업(192) 중 세세분류(19210)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203)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세세분류(20412, 20421, 20422, 20423, 20492, 20493, 20494, 20499)화학섬유 제조업(205)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중 세세분류(21101)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업종 전체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내화·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232)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중 세세분류(23911, 23919, 23991, 23992, 23993, 23994, 23999)
(24)1차 금속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업종 전체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 중 세세분류(25922)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자 부품 제조업(262) 중 세세분류(26221, 26292, 26299)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
비제조업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기업(351) 중 세세분류(35113, 35119) 및 공기 조절공급업증기·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3)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폐기물 처리업(382) 중 세세분류(3821, 3822)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2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내 불허용도</p> <p>② 제1항 외 허용용도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는 불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나목에 따른 봉안당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중 공동불허용도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일반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자원수환관련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 사업장·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업종을 영위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5호 발전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 사업장·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업종을 영위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8호 장례시설	

○ 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별표1. 불허용도

[공통불허용도]

- ①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공장 및 시설
-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및 시설 (다만, 폐기물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382)이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한함)
- ③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및 시설 (다만, 폐기물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382)이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함)
- ④ ②~③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인 경우 불허용도에서 제외함
- ⑤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공장 및 시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10)식료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 중 세세분류(10211, 10213, 10219, 10220)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
(11)음료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전체
(12)담배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전체
(13)섬유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131) 중 세세분류(13103, 13104)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132) 중 세세분류(13213)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중 세세분류 (139) (13994)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피제품 제조업(142)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세세분류(15110)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제 및 목재 가공업(161) 중 세세분류(16102, 16103) • 나무제품 제조업(162) 중 세세분류(16211, 16212)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세세분류(17110, 17121, 17122, 17123, 17124, 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중 세세분류(19210)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203)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세세분류(20412, 20421, 20422, 20423, 20492, 20493, 20494, 20499) • 화학섬유 제조업(205)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중 세세분류(21101)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전체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232)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중 세세분류(23911, 23919, 23991, 23992, 23993, 23994, 23999)
(24)1차 금속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전체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 중 세세분류(25922)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부품 제조업(262) 중 세세분류(26221, 26292, 26299)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
	비제조업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업(351) 중 세세분류(35113, 35119) • 증기·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3)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업(382) 중 세세분류(3821, 3822)
<p>① 「국토계획법」,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 내 불허용도 ② 제1항 외 허용용도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는 불허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나목에 따른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중 공동불허용도에 해당하는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공동불허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5호 발전시설 중 공동불허용도에 해당하는 시설</p>	

붙임3

입주불허 업종

전주혁신창업허브
창업동



<대강당(첨단누리홀), 1층>



<카페(카페지락), 2층>



<구내식당(생생차반), 2층>



<초기창업실(차오룸빌리지), 3층>



<예비창업실(어울림스퀘어), 3층>



<회의실, 3~6층(층별 각3실)>



<전산·일반교육실, 3층(5실)>



<휴게실·수면실, 6층>



<체력단련실·샤워실, 6층>

성장동



<대회의실, 1층>



<전산교육실, 2층(2실)>



<회의실, 2~4층(층별)>

예비창업동



<메이커실, 1층>



<전산·일반교육실, 1, 3층>



<3D프린팅실, 1층>

※ 성장동 이미지는 입주를 위한 참고 이미지임(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4

입주신청 관련 서류(양식)

※접수번호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신청서(일반기업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연락처(H.P)		이메일	

기업	기업명			설립일	· · ·	
	사업자번호	- - (법인, 개인)		업태/종목	/	
	전화번호			FAX		
	현주소			입주희망일	· · ·	
	입주예정인원	명	※ 실제 상주 예정 인원	입주이후 증원예정	명	
	입주희망호실	1순위	호	2순위	호	3순위
	활용계획 (해당 시 ■)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지사 <input type="checkbox"/> 사무용 <input type="checkbox"/> 연구용 <input type="checkbox"/> 공장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우대사항 (해당 시 ■)	<input type="checkbox"/> 복합소재(탄소소재 포함) 및 메카트로닉스 기반 관련 기업 <input type="checkbox"/> 드론, PAV(개인형 자율항공기) 관련 기업 <input type="checkbox"/>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 기업 <input type="checkbox"/>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부터 이전(확장) 기업				

당사는 전주첨단벤처단지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첨부 1) 및 증빙자료 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 4대 보험 가입자명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2) 7.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수량 : 총 1부(원본 1부) ※ 입주신청서 포함 입주모집공고 제출서류 목록 참조 ※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제출 ※ 수출실적(최근 3년)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첨부 1>

사 업 계 획 서

■ 기업 개요

기 업 명	매 출 액 (전년도)			백만원
자 본 금	총 자 산			백만원
상 시 종업원수	명	설립 일	.	
보유기술	.			
주요생산품	.			
소 재 지			면 적	전화 번호
본사 소재지	()			m ² (평)
지점 소재지 (해당시)	(1)	()		
	(2)	()		
기 업 주요연혁	.			

■ 대표자 인적사항

학력 (최종학력부 터기재)	기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공	학위
	부터	까지				
				졸업.수료.중퇴		
				졸업.수료.중퇴		
				졸업.수료.중퇴		

경력 (최근경력부 터기재)	기간		근무처			주요생산품
	부터	까지	근무처명	담당업무	직위	

대표자 보유기술 /특 기사항 (자격증, 상별, 대외활동 등)	.
---	---

■ 입주 시 설치(예정 포함) 설비

구분 (기보유, 예정)	설비명	규격(용량)	무게(kg)	수량	주용도

■ 주요 생산품(서비스) 업종코드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주요 사업활동 순위별 기재, 입주업종 판단 시 활용)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붙임1 참조)		해당사업 직전년도 실적	
	업종코드(5자리)	항목명(세세분류)	매출액	투입인력 수
1순위	예시) 70121	공학연구개발업	12억	4명
2순위	예시)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3억	2명
3순위				

■ 재무구조표

- ※ 최신 재무상태표 기준 작성
- ※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계산

- 자기자본비율

자본 총계(원)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부채와자본총계×100	
부채와 자본 총계(원)			

-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구 분	매출액(원)	매출액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인증 실적

연 번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인증명	수여기관	취득일자	비고 (유효기간만료일 등)
1	(예시)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4. 00. 00.	'27. 00. 00.
2				
3				
4				
5				
6				
7				
8				
9				
10				

■ 최근 3년 이내 고용 인원(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고용 인원, 4대보험 취득일 기준)

연번	성 명	연 령	4대보험 취득일	직 위	담 당 업 무	비 고
1						
2						
3						
4						
5						
6						
7						
8						

■ 입주예정인원 현황(최초 입주 시점 입주희망 호실에 상주인력 기준, 예정인원 포함)

연번	성 명	연 령	직 위	최종학력 및 전공	담당업무	비 고 (자격증,경력,개발실적 등)
1						
2						
3						
4						
5						

■ 입주이후 충원계획(인력확보계획,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상주인력 기준)

구 분	인원 충원 계획(명)				비 고
	입주~1년	1~2년	2~3년	계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기 타					
합 계					

* 총 합계가 입주신청서 상 입주이후 충원예정인원과 일치하도록 작성.(최초 입주예정인원 제외)

- 연구개발직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개발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사무관리직 : 인사, 기획, 경리 등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자
- 기 타 : 생산직, 판매관리직, 단순노무직, 기타 인원 종사자

■ 특허, 인증 등 지재권 보유현황(신청 중 포함)

연 번	종 류	내 용	인증기관	취득(출원)일자	비고
1					
2					
3					
4					

■ 수상실적

연번	종류	내용	수여기관	수상일자	비고
1					
2					
3					
4					

■ 투자유치실적

연번	연도	투자기관	투자유치액	비고
1			억원	
2			억원	
3			억원	

■ 주거래처(협력업체 포함)

(단위 : 백만원)

연번	업체명	주거래품	소재지	거래금액(연간)	비고
1					
2					
3					
4					

■ 매출실적 및 계획(최근 3개년 및 향후 3개년)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 실적 및 계획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내수							
수출							
합계							

* 연도별 매출 합계(내수+수출) 실적이 재무제표 상 매출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 수출실적의 경우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제출 필수

■ 세부 사업계획

1. 입주 동기 및 타당성

내용 예시)

- * 아이템의 개발 및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자의 전문성, 마인드, 역량 기술
 - 대표자 및 팀원의 전공, 관련분야의 경력과 사업 아이템과의 관계
 - 과거 사업화 진행 경험 또는 프로젝트 수행 경력 등 기재
 - 사업아이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표자 및 직원의 전문성을 기재
 - 제품화(기술구현) 전략
 - 해당 아이템의 제품구현 및 사업시행을 위해 강조할 수 있는 대표자 및 직원의 강약점 제시
- *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타당성에 대한 설명
 - 입주기업, 기관과의 협력 계획, 연관분야의 집적화 가능 여부 등
- * 인력확보 방안
 -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계획 작성

2. 입주 이후 사업화 추진계획

내용 예시)

- * 제품(기술)의 개요
 - 제품(기술)의 필요성, 용도, 사양, 주기능, 성능 등 제품(기술)에 대한 설명
 - 핵심기술의 확보내역 및 기술/제품의 최종목표
 - 제품(기술)의 개발현황 및 관련사진 등
- * 제품 완성 및 판매계획
 - 시장진입 전략 작성 (경쟁사 대비 제품의 차별성, 원가 우위성, 시장 경쟁력 등)
 - 제품(기술) 경쟁력 제고 여부(고객의 입장에서 경쟁제품(기술)과 비교하여 더 나은 점, 우위에 있는 기술력, 경쟁제품(기술)과 차별화된 요소(독특성), 경쟁제품(기술) 대비 우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 제품(기술)의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 국내외 판로개척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국내외 시장규모, 시장전망 및 동향, 시장진입 조건 등 시장 구조 및 특성, 주요 수요처 등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 등 매출발생을 위한 추진계획)
- * 경영 자금 규모 및 조달계획 작성

3. 우대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 예시)

* 우대사항(해당부분) 해당부분에 대한 설명(입주공고문 참조)

주요 생산품(서비스) 사진 및 설명

(사진)

(설명)

현재 연구개발 중(계획)인 사진 및 설명

(사진)

(설명)

<첨부 2>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주시는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 기업정보(입주예정인력 정보 포함) 등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u>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u> <u>[별표 1]에 따라 3년간</u>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업입주 모집 및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u>운영위원회(입주심사)</u>	<u>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u>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 기업정보(입주예정인력 정보 포함) 등	<u>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u> <u>[별표 1]에 따라 3년간</u>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업입주 모집 및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